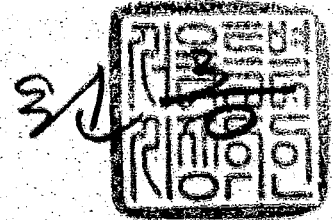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

이에 공포한다

서울특별시장 이



1994년 9월 22일

시·양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 별표 2-5 >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3 급	1	행정직 1
4 급	2	행정 또는 별정직(4급상당) 1 행정 또는 통신직 1
5 급	5	행정직 1, 행정 . 전산 또는 별정직(5급상당) 1, 행정 또는 전산직 2, 전산 또는 통신기술직 1
6 급	18	행정직 5, 전산직 11, 기계직 1, 통신기술직 1
7 급	28	행정직 6, 전산직 18, 전기직 1, 지적직 1, 통신기술직 2
8 급	34	행정직 11, 전산직 19, 지적직 1, 통신기술직 3
9 급	15	행정직 6, 전산직 6, 통신기술직 3
별정직	1	7급상당 1 : 영양사 1
기능직	31	7등급 2 : 전기장 1, 기계장 1 8등급 2 : 전산원 2 9등급 3 : 운전원 1, 전산원 2 10등급 24 : 통신원 3, 전기원 2, 기계원 1 (기계1), 운전원 2, 위생원 5 (사역5), 전산원 8, 조무원 1 (집배1), 방호원 2 (방호2)
합 계	135	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